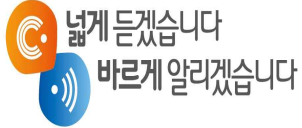
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	보 도 자 료		
	배포 일시	2014. 2. 13(목) 총 4매(본문 4)	
담당 부서	건설경제과	담당 자	• 건설경제과장 문성요, 사무관 이장원, 주무관 박재웅 • ☎ (044)201-3504, 3497, 3498
보 도 일 시		2014년 2월 1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13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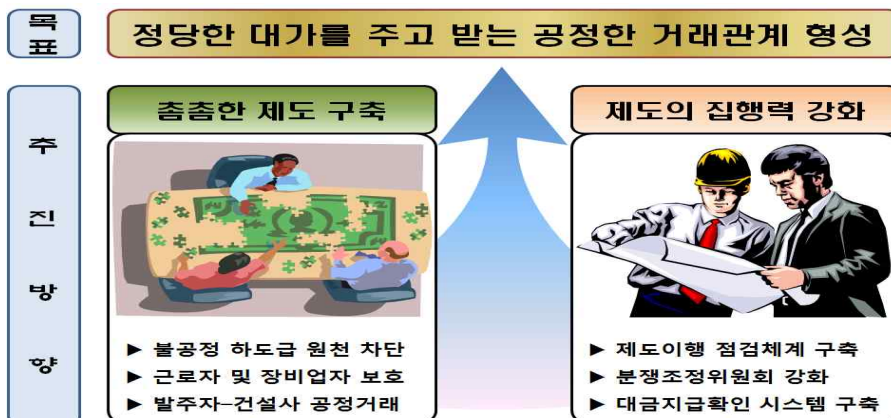
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

- 불공정 계약 무효화,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-

-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,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,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.

【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추진 경과】

- 국토부는 '13년 정책 목표를 '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'으로 정하고, 지난해 6월에 발표한 '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'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.
- 기존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제도를 구축 하였으며,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.



-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.
- 건설공사에서 원-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 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('14.2 시행)하였다.
 -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.
 -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, 임시 시설물 설치,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.
- 건설업자가 덤프트럭,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(공제조합 등)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 제도가 시행('13.6 도입)되고 있다.
 -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
 - 다만,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.
-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('14.5 시행)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.
 -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,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- 또한,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*(14.1.1 시행)하였다.

* 대기업 입찰제한 공사: 토건 → 토건, 토목, 건축, 산업·환경설비, 조경

-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-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.

□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.

-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중이다.

- 특히,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였으며,

- 불법하도급,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다.

- 또한, 해소센터는 사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조사·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
【 해결사례 1】

- 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(약 13억원)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

-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,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

【 해결사례 2】

- 건설기계대여업자 B씨 등은 진주 소재 전철 건설공사를 하고 장비대금(약 2천만원)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
-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수차례 업체 대표와 면담, 유선 협의를 통해 B씨가 장비대금을 지급받음

【 해결사례 3】

- 설계 용역업자 C씨는 ○○강 하천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설업체로부터 대금(약 2천만원)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
- 센터는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면담, 유선 협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하여 C씨가 대금을 지급받음

- **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**(14.2.7 시행)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.

-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~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**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.**

-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,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**적극 활용**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□ 국토부는 “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**공정문화가 확산**될 수 있도록 **추가적인 대책을 추진**할 계획이며,

-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**공정한 건설 시장 문화 확립**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